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603
----------	------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최기찬 의원 외 14명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5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최기찬 의원)

1. 제안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에서 조차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 권리 및 정당한 이용편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기의 설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02.14.~02.18.(의견없음)

I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 조례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의 화장실 등을 이용할 경우 소리를 듣지 못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알림 표시등”을 설치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기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u>제7조 ~ 제10조 (생략)</u>	<u>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u>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u>
------------------------	--

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의 명시(안 제7조제1항)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율은 87.9%, 적정 설치율은 84.6%로 전체 평균보다 설치율(80.2%) 및 적정설치율(74.8%) 비율은 높음.

〈표1〉 2018년 지역별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구 분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서울	27,856	1,281,950	1,126,201	87.9%	1,084,340	84.6%	3.3%
부산	11,542	556,144	450,345	81.0%	412,842	74.2%	6.8%
대구	8,206	426,993	344,582	80.7%	322,959	75.6%	5.1%
인천	12,260	539,621	429,301	79.6%	394,810	73.2%	6.4%
광주	7,065	352,632	289,910	82.2%	282,980	80.2%	2.0%
대전	3,881	210,210	174,163	82.9%	161,341	76.8%	6.1%
울산	3,887	191,761	163,218	85.1%	157,194	82.0%	3.1%
세종	919	49,855	44,316	88.9%	42,248	84.7%	4.2%
경기	38,247	1,760,119	1,446,055	82.2%	1,366,155	77.6%	4.6%
강원	5,794	318,419	250,496	78.7%	231,362	72.7%	6.0%
충북	8,632	446,844	316,577	70.8%	279,507	62.6%	8.2%
충남	8,016	416,073	324,729	78.0%	296,256	71.2%	6.8%
전북	11,317	551,305	425,521	77.2%	392,363	71.2%	6.0%
전남	10,440	517,090	378,530	73.2%	338,328	65.4%	7.8%
경북	11,842	605,288	450,702	74.5%	412,590	68.2%	6.3%
경남	12,466	639,345	495,402	77.5%	454,976	71.2%	6.3%
제주	3,577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5.1%
계	185,947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5.4%

출처 :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 이외에 편의시설의 종류별 개선사항으로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2〉 편의시설 종류별 개선방향

편의시설 종류	주요내용	개선방향
매개시설	매개시설의 경우 A, B, C 유형만 도출	기준 숙지를 위한 매뉴얼 보급, 건축 관계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시공 정밀도 향상 등이 필요함.
내부시설	내부시설에서는 각종 손잡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점자블록과 점자표지)의 개선이 필요	편의시설 기준과의 정합성을 위한 개선노력이 요구됨.
위생시설	화장실로의 접근성 확보와 함께 위생설비, 안내설비 등 개선항목 많음.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의 공간규모(면적) 검토를 기초로 기준숙지를 위한 매뉴얼 보급, 시공의 정밀도 향상, 인식의 개선 등, 가장 세심하고 집중적 개선 필요
안내시설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	시각·청각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등)/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등)의 설치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유도계획이 계획초기단계부터 마련 필요
기타시설	B, D유형의 항목이 다른 편의시설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기존의 기성제품의 종류별로 편의시설 관련기준과의 정합성을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출처 :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391,859명이며 이중 청각장애인은 61,995명으로 전체등록장애인의 15.8%에 해당되며 이는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하겠음.

〈표3〉 서울시 장애유형별 현황

(기준: 2022.12.31./단위: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164,464	40,991	61,995	3,421	27,634	39,859	7,491	16,546
391,859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8,883	998	2,156	2,715	385	3,087	1,234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 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④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편의법”)」 제2조¹⁾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13번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은 화장실 사용시 노크소리 등을 듣지 못해 화장실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화장실외에도 화장실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등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2023.1월 기준으로 서울시 공중화장실²⁾ 현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은 총 4,939개소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제6조제3항³⁾에 의해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이처럼 화장실 사용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특정장애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로 근거를 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됨

나.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노력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2항)

- 장애인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6조⁵⁾ 및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평균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1.>

4)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5. 1. 28.]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⁶⁾에 따르면, 전국의 청각장애인 추정 수는 44만여 명으로 청력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의 주된 보조기구인 보청기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청각장애인의 74%(32만6천여명)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보청기 사용율(74%)은 2017년 실태조사의 사용율(73.2%)에 비해 0.8%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보임.

〈표4〉 청각장애인 보청기 사용여부

(단위: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71.8	76.5	74.0
아니오	28.2	23.5	26.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40,481	200,251	440,732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청각장애인의 70% 이상이 보청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시설에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내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가 미비해, 청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고 음성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와 같은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청사,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설치되고 있는 상태임.
- 서울시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공달팽

6)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되며, 가장 최근의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는 2020년 12월 발간됨.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관 수술 지원 사업,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농아인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이처럼 서울시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비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 특히 개선이 필요한 비치용품으로는 보청기기가 43.5%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안에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다. 집행부서 의견 : 보류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장비 구비 노력의무에는 공감하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이미 근거가 있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 특정 장애유형만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따로 규정하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3 종합의견

- 개정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제공을 위해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화장실 사용여부 표시등을 설치하고,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지원이 기 추진중이라는 점과 다른 장애유형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급성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서에서는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편의제공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 및 관리사업 등을 다시 한번 점검·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1 관련법령

참고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의무)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나. 대변기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 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③ 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훨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별표3」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u>보청기기</u>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u>보청기기</u>
	공공도서관	<u>보청기기</u>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u>보청기기</u>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u>보청기기</u>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훨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u>보청기기</u>

참고 2 청각장애인 대상 추진사업 현황

구분	장애인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및 제81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및 제16조 (수어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02호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제71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사업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통합 도모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 및 복지공간 확충으로 복지서비스 제고	수어통역사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수어통역사 양성을 통해 수어통역 가능인구 확대 및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사업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무료이용)	서울시 농인(청각, 언어장애인)	서울시 주민 및 청각장애인
사업내용	수어통역·상담·교육 및 농아인쉼터 운영	수어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교육, 수어통역사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과정
사업예산	7,957,437천원	480,462천원	612,064천원
수행기관 (위탁주체)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 위탁기간 :22.1.1.~ 24.12.31.(3년간)
시설현황	26개소 (본부1, 자치구 센터25)	총 21개소 ※ 미조성 자치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서울수어전문교육원(서대문구)
추진현황 ('24.1월 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통역·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26,395건(42,063명)제공 ○ 자치구 민원실(10개구) 수어통역사 각 1명(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프로그램 59개, 1,946회 운영, 5,723명(누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 초급 등 16개 과정 누적 수강생 794명 교육 ○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합격자 356명(누적)

구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청각,언어-3개소)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비용의 보조)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사업목적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재활치료 지원으로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	문자 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에게 전문 문자통역사를 파견하여 현장 및 원격지원을 통해 정보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활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각장애인	서울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서울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비 및 검사비 (최대 700만원) ○ 재활치료 (1년차) 450만원 (2년차) 350만원 (3년차) 250만원 ○ 소모품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충전기 등 소모품 구입비(최대 36만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서울시민 청각장애인에게 한글속기 자격증을 가진 문자통역사가 무료로 문자통역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시립100%, 구법인 70%:30%) ○ 장애인복지관 시체사업비 지원 (가족돌봄휴가제, 거주시설네트워크, 1인1취미 등)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서대문농아인복지관: 390백만원
사업예산	178,140천원	200,000천원	7,758,397천원(3개소)
수행기관 (위탁주체)	자치구(동주민센터)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사)한국농아인협회 -민간위탁('20.6.1.~'25.5.31.) ○ 삼성소리샘복지관(동작구) -(사복)삼성농아원 ○ 청음복지관(강남구) -(사복)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시설현황	-	-	3개소
추진현황 ('24.1월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계획 수립 : '24.2 ○ 모집기간 : 2024. 2. 19. (월)~3. 20.(수), 30일간 ○ 지원인원(예정) : 42명 - 신규수술 7, 신규재활 11, 기존재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공모선정 : '2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보조금 교부 : '24.1월 - 서대문농아인: 662백만원 - 삼성소리샘: 523백만원 - 청음: 451백만원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03
----------	------

발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의자: 최기찬, 김기덕, 김인제,
박승진, 박칠성, 서준오,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최재란, 한신
의원(15명)

1. 제안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에서 조차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 권리 및 정당한 이용편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기의 설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①</u>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u>②</u>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u>제7조 ~ 제10조 (생략)</u>	<p><u>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u></p>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안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제1항 및 제2항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제1항	○	다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제2항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비용 발생은 분명하나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향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안이유¹⁾에 맞춰 화장실 편의증진 장비 설치(청각장애인 초인등 등)를 기준으로 추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정해진 사안(설치장소)이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지출로 규정한 지역 외 추가 설치 여부는 정책적 사안의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1)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에서 조차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 권리 및 정당한 이용편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7. 26.>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균형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 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 스기 및 보청기기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점자업무안내책자 저시력용 독서기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 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 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 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 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 한다)로서 제1종 균형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 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 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
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췌